

3. 진로강좌 및 각종 특강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4. 성교육특강 시행에 따른 만족도 조사 실시

제8조(교과외 활동 지원 위원회) ① 위원회의 구성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학생 교과외 활동에 대한 전반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3.>

② 삭제 <2016.12.23.>

③ 삭제 <2016.12.23.>

④ 삭제 <2016.12.23.>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교과외 활동에 관한 전반사항
2. 학생의 교과외 활동에 관한 정책 결정
3. 학생의 교과외 활동에 대한 평가
4. 이외 학생의 교과외 활동 발굴 등에 관한 사항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